



근로자재해공제증권

증권번호 제2023120081000317호

계약자 및 피공제자

계약자 : (10574)(주)원방테크
주소 :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율로30번길 32-10 (주)원방테크
기본 피공제자 : (주)원방테크[110111-0645353]

최초청약일 : 2023년 3월 24일

계약내용(※공제책임은 공제로 납입시점부터 개시되며, 시작일이 미래인 경우 시작일 00시부터 개시됩니다)

공제기간 : 2023년3월26일부터 2024년3월26일 24:00시 까지
계약유형 : 연간포괄계약
공사명 : 모든사업장
총공사금액 : 해당없음
소재지 : (99999) 전국일원

가입대상 및 보상한도

가입대상	사업의 종류	임금총액	1인당 보상한도	1사고당 보상한도
현장직	건축건설공사	59,842,097,746원	2억원	5억원
내근직	각급사무소	2,995,098,067원	2억원	5억원

하수급자 소속 근로자 노무비 포함 여부 : 예
건설기계 파견근로자(특수형태근로종사자) 노무비 포함 여부 : 예

적용약관

필수약관 : 보통약관,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특별약관
선택약관 : 해당사항 없음

추가기재사항

피공제자에 하수급사를 추가하며, 하수급사 근로자를 보상합니다.
피공제자에 원수급인을 포함합니다.
건설기계 임차 시 파견근로자(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)를 보상합니다.

총공제료 : 52,770,400원

일시납 : 2023년3월24일 52,770,400원

- > 공사간별 계약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조합에 통보하여 공제기간을 연장하셔야 하며, 공제기간 연장 전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.
- > 공제료 입금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. **계약 및 보상상담 문의 : T. 02-3284-2000 (4번)**
- > 증권 발급사실 및 공제약관, 보상심사 진행상황은 전문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(www.kscfc.c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조합은 해당 공제약관에 의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증권을 드립니다.

대한민국정부
인지세
100원
동작세무서
후납승인
제2018-100000891호

전문건설공제조



발행일시 : 인터넷 2023.03.24 12시51분

이사장

이은재